2026년 제3회 건축해체 분야 전문위원회 심의 주요결과

[1호 안건: 마전동 657-11번지, 건축물 해체 허가에 관한 사항]

운영기관	인천광역시 검단구	심의일자	2026. 10. 27.

건축종별	[ ] 신축, [ ] 증축, [ ] 대수선, [○] 기타				
건 축 주	성명(법인명) 인천도시공사				
대지현황	대지위치	인천광역시 검단구 마전동			
	지번	657 - 11	관련지번		
	대지면적	8,608 ㎡	용도지역(지구,지역)	자연녹지지역	
건축물현황	건축면적	154.74 ㎡	건폐율	1.8 %	층수 지하 : 0 층/지상: 1 층
	주용도	제1종근린생활시설	구조	철근콘크리트구조	건축물 동수 1 동
	최고높이	7.5 m	용적률	1.39 %	연면적 합계 119.4 ㎡
건축물 해체현황	해체 건축물 수 (해체구간)	1개동(전체 해체)			해체 연면적 119.4㎡
	석면 함유재 존치 여부	x	하수처리시설 철거 여부	x	

심의내용	구 분	주요 심의결과
	(해 체)분야	- 야간 안전 확보 보강 - 장비주변 신호수 배치 - CCTV 촬영 각도 확인 - 이동식 비계 사용 시 난간을 촘촘히 설치하여 추락 및 전도 위험에 대비할 것 - 실내 CCTV 설치 관련 보강 - 비계설치(외부)시 날개벽 구건물 부분의 비계설치가 되지 않는 부분은 별도의 계획(보강) 반영 - 해체계획서상 비계설치서 가새설치 적용 - 이동식비계설치시 안전줄(작업시) 난간에 결속토록 반영

심의결과

[ ] 원안 의결 [○] 조건부 의결 [ ] 재검토 의결 [ ] 부결

※ 작성기준(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.3 관련)

- 원안 의결: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
- 조건부 의결: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
- 재검토 의결: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
- 부결: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(단, 「건축위원회 심의기준」 2.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)

2026년 제3회 건축해체 분야 전문위원회 심의 주요결과

[2호 안건: 대곡동 449-2번지 외 1필지, 건축물 해체 허가에 관한 사항]

운영기관	인천광역시 검단구	심의일자	2026. 10. 27.

건축종별	[ ] 신축, [ ] 증축, [ ] 대수선, [○] 기타			
건 축 주	성명(법인명) 주식회사 하람피앤아이			
대지현황	대지위치	인천광역시 검단구 대곡동		
	지번	449 - 2	관련지번	449-3
	대지면적	4,555 ㎡	용도지역(지구,지역)	자연녹지지역
건축물현황	건축면적	689.42 ㎡	건폐율	15.14 %
	주용도	제2종근린생활시설, 창고	구조	일반철골구조
	최고높이	8 m	용적률	15.14 %
건축물 해체현황	해체 건축물 수 (해체구간)	2개동(일부 해체)	해체 연면적	541.78㎡
	석면 함유재 존치 여부	x	하수처리시설 철거 여부	○

심의내용	구 분	주요 심의결과
	(해 체)분야	- 신호수배치 확인 - 가시설(비계) 설치시 A동 장변건축물 부분의 일부 비계설치 요망(추가설치)

심의결과

[ ] 원안 의결 [○] 조건부 의결 [ ] 재검토 의결 [ ] 부결

※ 작성기준(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.3 관련)

- 원안 의결: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
- 조건부 의결: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
- 재검토 의결: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
- 부결: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(단, 「건축위원회 심의기준」 2.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)

2026년 제3회 건축해체 분야 전문위원회 심의 주요결과

[3호 안건: 마전동 631번지, 건축물 해체 허가에 관한 사항]

운영기관	인천광역시 검단구	심의일자	2026. 10. 27.

건축종별	[ ] 신축, [ ] 증축, [ ] 대수선, [○] 기타			
건 축 주	성명(법인명) 장계자			
대지현황	대지위치	인천광역시 검단구 마전동		
	지번	631 -	관련지번	
	대지면적	1,910 ㎡	용도지역(지구,지역)	자연녹지지역
건축물현황	건축면적	258 ㎡	건폐율	13.51 %
	주용도	제2종근린생활시설	구조	경량철골구조, 일반철골구조
	최고높이	5.1 m	용적률	13.51 %
건축물 해체현황	해체 건축물 수 (해체구간)	2개동(전체 해체)	해체 연면적	258㎡
	석면 함유재 존치 여부	x	하수처리시설 철거 여부	x

심의내용	구 분	주요 심의결과
	(해 체)분야	- 횡단보도 신호수 배치 - 되메우기 계획 보완 - 가시설(비계) 설치 시 1, 2동 장변건축물 부분의 일부 비계설치 추가 요망 - 일부 가시설구간중 쌍줄비계+외줄비계부분 설치 상세도 계획서에 반영

심의결과

[ ] 원안 의결 [○] 조건부 의결 [ ] 재검토 의결 [ ] 부결

※ 작성기준(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.3 관련)

- 원안 의결: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
- 조건부 의결: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
- 재검토 의결: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
- 부결: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(단, 「건축위원회 심의기준」 2.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)